제8대 교수회 알림톡 #22_발행: 2023년 5월 8일(월)

교원의 적법한 동의 없는 보수체계 변경은 무효

최근 대법원은 교원의 적법한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은 보수체계 변경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교원의 적합한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은 보수체계 변경은 중대한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하며 교원의 보수체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 우리 대학은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타수당과 보직수당 삭감이 교원의 동의 절차 없이 행해졌다가 논란 끝에 복구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수회는 알림톡을 통해 교원의 보수체계는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으며 나아가 학교 경영을 이유로 교원의 보수체계를 변경하는 시도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매일노동뉴스

편집. 2023-05-07 07:30 (일) 로그인 | 회원가입 | 모바일웹

노동 정치 · 경제 사회 사람&문화 안전과 건강 기획연재 오피니언 노동사건 따라잡기

노동법

"'실질 임금 감소' 교수 임금체계 변경은 위법" 대법원 명시적 첫 판결

대전대, 교수 동의 없이 호봉제→성과연봉제 …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립대 교수의 보수를 기존의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지급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수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하급심 확정이나 파기환송된 사례는 있었지만, 대법원이 대학 교원의 보수체계 변경의 위법성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후략) …

[원문] 매일노동뉴스 (2023.05.07)